

#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104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5. 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5. 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5. 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행정과장 이기동)

#### 가. 개정이유

-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-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·탄력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##### 1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

가) 총정원: 749명 → 761명(증12명)

- 본청: 365명 → 377명(증12명)
- 의회: 20명(변동없음)
- 직속기관: 142명(변동없음)
- 사업소: 28명(변동없음)
- 읍·면: 194명(변동없음)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3) 합 의
 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0448(2026. 3. 6.)호]

#### 4) 기타사항

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451호
  - . 예고기간: 2026. 3. 3.~3. 23.(20일간)
  - .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 조문 대비표: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#### 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2조, 별표3)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, 집행기관의 정원,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을 749명에서 761명으로 12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인력을 본청 중심으로 배치한 것은 행정수요 변화 대응 및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
#### 나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인력 보강과 재배치를 통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,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## 5. 토 론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####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